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년 7월 8일(수) 14:00 이후

담당 : 기업지원본부 전종윤 과장
(051-990-7063)

부산상의-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부산상의로 이전...
지역기업 분쟁해결 지원 본격화

▶ **중재·조정 및 분쟁예방 교육 등 지역기업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부산상의 회관 4층, 중재지원 거점 마련으로 회원기업 지원체계 강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8일(수) 오후 2시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지역기업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상의 회관 4층으로 이전한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이전식도 함께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부산상공회의소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최근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지역 기업들이 겪는 법적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 정현민 상근부회장, 이규중 사무처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박경한 부산지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아태해사중재센터가 부산상의 회관 4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비즈니스 거점과 전문 중재기관이 공간을 공유하게 된 만큼, 지역기업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기업 대상 신속·효율적인 중재서비스 제공 ▲중재제도 및 분쟁 예방 관련 교육·홍보 ▲부산상의 회원기업 대상 찾아가는 중재 특강 운영 ▲지역 기업의 분쟁 해결 수요 발굴 및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와 아태해사중재센터의 부산상의 회관 이전은 지역 기업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상사중재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는 뜻을 전달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가 부산상의 회관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 기업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 라면서, “부산상의가 가진 탄탄한 현장 네트워크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 해결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지역 기업들의 분쟁 예방과 신속·공정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첨 부 1. 행사개요 1부.

부산상공회의소-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식 및 부산지부·아태해사중재센터 이전식 개요

1 행사 개요

○ **일 시** : 2026. 7. 8.(수) 14:00~15:30

○ **장 소**

- 업무협약 체결식: 8층 회의실
- 부산지부·아태해사중재센터 이전식: 4층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 참석대상: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등 10명

○ 협약내용

- 부산상의 회원사에 대한 중재 서비스 신속·효율적 제공
- 중재제도 관련 정보·자료 제공 및 홍보
- 시설 및 기자재의 활용 협조

2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5	- 상의 도착 / 사전 차담	8층 접견실
14:25~14:30	- 8층 회의실 이동 및 착석	8층 회의실
14:30~14:3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33~14:40	- **회장 인사말** - 원장 인사말	
14:40~14:45	- 업무협약 체결 취지 및 내용 소개	
14:45~14:50	- 업무협약 서명 및 교환 - 기념촬영	
이전식 장소 이동 (4층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앞)		
14:50~15:00	- 이전식 장소 이동 및 현판 제막 준비	4층 중재원
15:00~15:03	- 이전 취지 안내	
15:03~15:15	-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	
15:15~15:30	- 부산지부 내부 라운딩 및 환담 - 마무리	

부산상공회의소 KCAB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상공회의소 - 대한상사중재원

업 무 협 약 서

부산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상생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발전을 돕고, 국내외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

1. 중재, 조정, 일선, 상담 등의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산상의 회원사들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효율적 처리
2. 부산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중재·조정 등 분쟁해결제도, 표준중재조항 및 분쟁예방 방안에 관한 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3. 부산상의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중재제도, 표준중재조항, 분쟁예방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중재특강 운영
4. 부산지역 기업의 분쟁해결 수요 파악 및 중재제도 이용 기반 확대를 위한 협력
5. 그 밖에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비용부담)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 기관이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상호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 모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 간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 전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6조(기타) 협약내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하거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이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8일

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회 창 양 제 생	**원 창 신 현 윤**